


헌법집중(전정5판) 추록

P 299 (1) 단락 본문 다섯째 줄 내용 대체 (2025. 7. 계엄법 개정_거주·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 삭제)

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제3항) 및 국민의 **재산**, **단체행동**(계엄법 제9조 제1항·제3항)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⁴¹⁾**

 두문자
영언법정재
(거) 단비상

P 299 (2) 단락 본문 여덟째 줄 내용 대체 (2025. 7. 계엄법 개정_계엄선포 국회 통고절차 강화)

한편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과 함께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하고(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하며**(계엄법 제4조 제2항),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 제1항). **

※ 다음 페이지에 계엄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계엄법 개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행 중 군인,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 안전 등에 대한 심의권 등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관련 안전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

신구조문대비표

「계엄법」

계엄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계엄법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략)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⑥ (생략)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p>(通告)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 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p>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정상화) ① (생 략)</p> <p>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p>	<p>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정상화) ① (현행과 같음)</p> <p>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p>

<p>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p>	<p>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단서 삭제></p>
<p>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략)</p> <p><신설></p>	<p>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벌칙)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1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 312 Ⅲ. 단락 본문 셋째 줄 ② 내용 대체 (2025년 선고 최신판례 반영)

② 감사원은 직권이나 국회의 감사요구(국회법 제127조의2) 또는 국민의 감사청구(부패방지법 제72조)에 의하여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 직무감찰은 직무수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조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운영개선과 향상을 도모(**적극적** 행정감찰)하고 직원의 비위를 **척결(소극적 비위감찰)**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기초한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인바, **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2025.2.27. 2023헌라5 등). **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 2025.2.27. 2023헌라5 [인용]

헌법 제97조는 피청구인(감사원)에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그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

P 328 I. 단락 본문 다섯째 줄 ② 내용 대체 (2025. 1. 헌법재판소법 개정_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근거 격상)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11조 제4항). **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되,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고(헌재법 제12조의2
제1항), 결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대행하되,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
행한다(동조 제2항). *

P 329 도표 첫 번째 란 “헌법소원심판” 칸에 “○” 추가

P 365 도표 마지막 란 “헌법재판소” 칸 내용 대체 (2025. 1. 헌법재판소법 개정_헌법재판소
장의 권한대행 근거 격상)

‘일시사고’ 임명일자
> 연장자 / ‘결위·
1월 이상 사고’ 재판관
회의 선출

※ 다음 페이지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p>헌법재판소법 개정</p> <p>[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p> <p>◇ 개정이유</p> <p>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p>
--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
<p>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생략)</p> <p>④ 헌법재판소장이 결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p>	<p>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신설〉</p>	<p>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p> <p>② 헌법재판소장이 결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p> <p>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피선거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거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거자로 한다.</p>